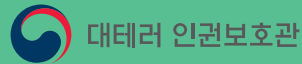


대테러 인권보호관이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이하 '테러방지법')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은
테러방지법에 따라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



대테러활동 인권 지킴이

인권을 지키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하는 일은?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아래와 같은 일을 합니다.

첫째 인권보호 자문 개선사항 권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과 제도에
있어서 인권보호에 관하여 자문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합니다.



둘째 인권 침해 민원 처리

대테러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민원사건을
처리합니다.



셋째 관계기관 인권교육 인권보호 활동수행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등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넷째 위원장 보고 후 인권침해 시정 권고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이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시 대응절차 및 처리방법

처리대상

대테러활동 중 자신의 인권 혹은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누구든지 대테러 인권보호관에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테러 활동 이런?

테러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 · 시설 · 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 확보



그 밖의 테러위험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



처리 과정

신속처리 및 2개월 이내 결과통지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이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민원인에게 통지합니다.



후속 조치

관계기관에 시정 권고

민원 조사 결과,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민원접수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대테러인권보호관 지원반에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 | 방문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7층



전화 02 739 8177

팩스 02 739 8180



전자우편

osa1004@korea.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법률구조 · 고발 등의 후속조치

민원인의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안내 · 고발이나 수사
의뢰 · 당사자나 책임자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